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5.4.21.(화) 15:30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#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인수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(안 제8조)
- 나.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3조제2항과 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 제13조제2항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함(부칙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운용중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